

3.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

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8. 11. 24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(1998. 11. 16 대통령령 제15932호)이 개정됨에 따라,

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하되,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비, 도매업·소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,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에는 건물 및 당해 건물의 부착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〈재정경제부 제공〉
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사업용자산의 범위) 영 제24조 제1항에서 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”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.

1. 건설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
2. 도매업, 소매업 및 영 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

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합리화 시설

3.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